

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
(어르신·장애인복지과)

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안 번호	55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6년 2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2(승인 및 동의)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근거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, 제81조(비용보조)

나. 위탁대상 현황

- 시설명 :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
- 위치 :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28(안암동), 지2층
- 규모 : 약 133.84㎡(약 40.5평)
- 설치기준 :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㎡ 이상(거실, 조리실, 사무실 등)
- 인력 : 5인 (센터장 1, 사회재활교사 3, 사무원 1)

다. 위탁기간 :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

라. 위탁방법 : 공개 모집,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

마. 위탁사무의 범위

-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시설관리·운영

- 장애인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 돌봄지원
- 맞춤형 프로그램 및 문화여가수업을 통한 개별적 기능향상 지원
- 우리구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및 기타 구가 요청하는 사항 등

바. 위탁예산 : 200,000천원(구비100%, 인건비 및 운영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3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

-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.
-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4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1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자활·취업·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문화·예술·영상·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4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사회적기업, 공정무역,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청소, 경비, 교통,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5) 장애인복지법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5) 장애인복지법 제81조(비용보조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본예산 편성(민간위탁금 200,000천원)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